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1.

이 진 환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이 진 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조례는 기존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」에 외국인 유학생을 명시하여 재외국민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
- 외국인유학생의 취·창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,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조례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」로 변경하여 ‘외국인유학생’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‘외국인유학생’의 범위를 「출입국관리법」과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제1항은 제목을 “지원범위”에서 “지원사업”으로 변경하고, 취·창업 교육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으로 외국인유학생의 실질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사용된 “외국인주민”을 “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”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이 조례안은 ‘외국인유학생’을 조례에 명시하고, 외국인 인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,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10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14

발 의 자: 이진환, 장호섭, 도하석
남현주, 김해철, 박정환

1. 제안이유

- 외국인유학생을 조례에 명시하고, 재외국민 등 지원 대상을 확대 함으로써,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·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지역 내 인재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 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」 로 변경
- 나.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유학생의 범위 규정(안 제2조)
- 다. 취업·창업 교육, 상담 및 지원 등 지원사업 확대(안 제7조1항3호)
- 라. 조례 전반에 사용된 “외국인주민” 을 “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” 으로 일괄 변경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출입국관리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”를 “대구광역시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외국인유학생”이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6호(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

나. 지역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연수생

제4조제2항 중 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”을 “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구 소재 관련기관”을 “관련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

호와 같다.

1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2. 고충·생활·법률 등 상담
3. 취업·창업 교육, 상담 및 지원
4.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, 질병 등의 긴급구호
5. 문화·체육행사 개최
6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조, 제2조제3호(중전의 제2호), 제3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1항, 제8조제3호 및 제4호, 제9조, 제10조제1항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외국인주민”을 각각 “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</u></p>	<p><u>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</u>」 제3조에 따라 <u>대구광역시 달서구</u>에 거주하는 <u>외국인주민</u>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대구광역시</u> ----- ----- -- <u>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외국인유학생</u>”이란 「<u>출입국관리법</u>」 제10조의2에 따라 <u>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</u>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고등교육법 시행령</u>」</p>

2. “외국인주민 지원단체”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외국인주민의 지위)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·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

제29조제2항제6호(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
나. 지역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연수생

3. -----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

-----.

제3조(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)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
-----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

---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
-----.

② ---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
고,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2. (생략)
3. 구 소재 관련기관,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4. 5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조(지원대상)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지원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
-----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-----
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
-----.

② ---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관련기관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대상) ① -----
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사업)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
2.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 등 상담

3.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, 질병 등의 긴급구호

4.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
5.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생략)

제8조(세계인의 날) 구청장은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명예주민증 수여, 유공자·단체(외국인주민 포함) 격려

4.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제9조(포상)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2. 고충·생활·법률 등 상담

3. 취업·창업 교육, 상담 및 지원

4.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, 질병 등의 긴급구호

5. 문화·체육행사 개최

6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세계인의 날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-----

4. ---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-----
--

제9조(포상) ----- 외국인주민
및 외국인유학생 -----

-----.

제10조(명예구민) ① 구청장은 구
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
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
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예우 등) 구청장은 제8조
제3호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
여한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
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명예구민) ① -----
----- 외국인
주민 및 외국인유학생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예우 등) -----

---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
생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□ 출입국관리법

제10조(체류자격)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.

1. 일반체류자격: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
2. 영주자격: 대한민국에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

제10조의2(일반체류자격)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(이하 “일반체류자격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생략
 2. 장기체류자격: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-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,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,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고등교육법

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·지원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·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,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

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, 방법,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29조(입학·편입학 등)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2호·제3호·제8호·제9호·제11호·제12호·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.

1. ~ 5. 생략

6.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
7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

가. 재외국민

나. 외국인

다.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

8. ~ 16. 생략